

대전지방법원 2024. 10. 22 선고 2023가단242315 판결 [보증채무금]

전 문

원고A조합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갑생, 우원진

피고B중앙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보람

변론 종결 2024. 8. 20.

판결 선고 2024. 10. 22.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55,532,014원 및 그 중 342,728,934원에 대하여 2022. 12. 9.부터 이 사건 소장부분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9. 16. 주식회사 C(이하 'C'이라 한다)과 보증금액 4억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2015. 9. 18. C에게 신용보증서(보증금액 4억원, 보증기간 대출일로부터 3년, 대출예정금액 5억, 보증비율 80%, 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서'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나. 원고는 2015. 10. 12. C과 여신금액 5억원, 여신기간 만료일 2018. 10. 12., 변동금리(기준금리 + 2.21%)로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C에게 5억원을 대여(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하였다. 이후 이 사건 대출의 대출기한이 연장되면서, 이 사건 보증서의 보증기한도 2020. 10. 12.까지로 연장되었다.

다. 원고는 C으로부터 변제기가 도래하였음에도 이 사건 대출금을 변제받지 못하자, 원고는 2022. 12. 8.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의 미변제 원금 428,411,168원의 보증비율 80%에 해당하는 342,728,934원과 2021. 6. 13.까지의 이자 12,803,080원, 합계 355,532,014원의 대손판정을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2023. 4. 24.경 신용보증약관 제7조 제3호에 의한 보증부채무 실행제한 사유가 있었음을 이유로 보증금의 지급을 거절하였다.

라. 한편, C은 2013. 6.경 채권자인 D건설에 의해 C의 원고에 대한 예금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라 한다)을 받은바 있고, 위 압류는 2016. 7. 22.경 해제된 된 바 있다.

마.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 중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고, 피고의 신용보증면책기준(직접보증용) 제8조 나항에 의하면 보증부채무 취급점에서 보증사고 통지사유 중 어느 하나라도 발생(약관 제5조제1항제11호 및 제12호는 사유발생 사실 인지)되어 있는 채무자에게 관리기관의 동의 없이 보증부채무를 실행한 때에는 보증사고 통지사유 발생(인지) 후에 취급한 보증부채무에 보증비율을 곱한 금액 및 종속 채무를 면책범의로 정하고 있다.

신용보증약정서

제2조 E법령 등

① 이 약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 및 관리기관의 신용보증에 관한 제규정을 따르겠습니다.

신용보증약관

제5조(통지의무)

① 채권자는 다음 각호의 경우 제3항에 따라 관리기관¹⁾에 서면(전상통지)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또는 전상통지)외의 방식으로 관리기관에 통지할 경우에는 통지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1. 주채무를 실행하였을 때

(중략)

12. 채무자에 대한 압류·가압류·가처분 결정, 경매신청 또는 채무자의 폐업 등 보증부채무의 채권보전이 우려되는 사실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④ 제1항의 통지사유가 발생한 후 해당 통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통지사유는 처음부터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2개 이상의 통지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통지사유의 전부가 해소되어야 합니다.

제7조(보증채무의 실행제한) 채권자는 보증서가 발급된 경우라도 보증부채무 실행전에 채무자에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라도 발생한 경우에는 따로 관리기간의 승인을 받은 때를 제외하고는 보증부채무를 시행하여서는 아니됩니다.

1. 채권자의 취급점에서 채무자의 다른 채무가 연체중인 때
2. 제5조제1항제4호부터 제1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
3. 제5조제1항제1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사유발생 사실을 인지한 때

제14조(면책사항)관리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증부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합니다.

1. 신용보증서 앞면의 기재내용 및 특약사항을 위반하였을 때
5. 제5조(통지의무)의 규정을 위반하여 관리기간의 채권보전에 장애가 초래된 때
7. 제7조(보증부채무의 실행제한)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증부채무를 실행하였을 때

제15조(면책범위) 관리기관의 면책범위는 관리기관이 따로 정하여 채권자에게 통지하는 신용보증면책기준(직접보증용)에 의합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 17호증, 을 제2, 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가 이 사건 압류가 있음에도 C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출하여 주었다 하더라도, 피고 역시 이 사건 압류가 있던 사실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이 사건 신용보증서를 발부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압류 사실을 피고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더욱이 이 사건 압류가 2016. 7. 22.경 해제되어 신용보증약관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통지사유가 처음부터 발생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신용보증약관 제7조 제3호에 의한 보증부채무의 실행제한 사유로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지 못한 이 사건 대출의 원금 428,411,168원의 이 사건 보증서의 보증을 80%에 해당하는 342,728,934원과 2021. 6. 13.까지의 이자 12,803,080원을 합한 355,532,014원 및 그 중 위 342,728,934원에 대하여 원고가 보증금의 지급을 구한 날의 다음날인 2022. 12. 9.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하였고, 이 사건 압류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보증부채무를 실시하여 신용보증약관 제14조 제3호의 의해 피고는 면책되었다.

3. 판단

가. 먼저 피고가 이 사건 보증서를 발부하기 전에 이 사건 압류 사실을 알았는지에 관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갑 제4, 5, 12호증의1의 각 기재만으로 피고가 이 사건 보증서 발급 전에 이 사건 압류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의 보증원장조회표에 이 사건 압류 사실이 기재되어 있지 않음을 인정할 수 있어 피고는 이 사건 압류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보증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압류 사실을 알고 있었음을 전제로 하여 피고가 면책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신용보증약관 제5조 제4항에 의하여 이 사건 압류가 추후에 해제되어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통지할 의무가 없게 되므로 피고는 면책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보증부채무의 실행제한을 규정한 신용보증약관 제7조는 채무자에게 해당 사유가 있을 때는 채무자가 보증부채무를 변제하기 어렵고, 대출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보증부채무의 실행을 제한 한 것으로 통지의무 면제를 규정한 신용보증약관 제5조 제4항이 신용보증약관 제7조에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신용보증약관 제5조 제3항 제6호에 의하면 원고는 통지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인지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피고에게 통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통지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보증서를 발부하였다 하더라도 이 사건 대출을 실시할 당시 이 사건 압류가 있었고 원고가 이를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원고는 관리기관이 피고의 승인 없이 이 사건 대출을 실시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이를 실시하였으므로 신용보증약관 제14조 7호에 의하여 피고는 보증부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면하게 되는데, 이 사건 대출 전부가 원고가 이 사건 압류를 인지한 후에 실시되었으므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보증서에 의한 보증금 전부가 면책된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발생한다.

판사김정현

1) E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용보증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F중앙외와 그 지역보증센터, 권역보증센터를 말한다.